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5
----------	------

발의년월일 : 2010. 9. 13.
발 의 자 : 김동기 의원 외 4인

개정이유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기 위함.

주요골자

-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 및 신설된 부서를 기준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기준으로 동 조례안에 반영 정비 함 (안 제3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 제2호부터 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지식정보사업소, U정보센터,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사회위원회

- 가. 기획경제국(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 나.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시관실, <u>행정지원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청조경제국(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 <u>과</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정보문화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경제사회위원회 가. 청조경제국(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주민생 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 성과, 스포츠마케팅과, 지구환경과)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u>클린사업소</u>,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속 하는 사항</p> <p>4. 도시건설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도 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지식정보사업소, U정보센터,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현행과 같음)</p> <p>3. 경제사회위원회 가. 기획경제국(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 과),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환경정책과, 청소 행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u><삭제></u>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 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4.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지식정보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 하부행정기관 : 상록구, 단원구, 일동, 이동,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제3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과·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명칭 및 소재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 청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감사관을 둔다.

제6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기획경제국·주민생활국·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문화관광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민간협력, 민원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관광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세정과·기업유치과·경제정책과·녹색성장과 및 생명산업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예산, 심사분석, 법무 및 시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신재생 및 에너지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제9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국에는 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일자리정책과·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 장애인, 노인 및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출산, 아동 및 보육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식품안전·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 및 재난안전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공영개발 및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및 디자인,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건설, 도로, 지리정보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대책, 재난안전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녹지과·시민공원과·교통정책과 및 녹색교통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2.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녹색교통 시책 및 대중교통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제16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및 농업경영 개선사업
4. 시설 원예·채소·과수·화훼 및 특용·약물작물재배 기술개발 및 지도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산업지원사업소·지식정보사업소·외국인주민센터·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

제19조(소장) 각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소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수도시설, 급수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바.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원사업소에는 기업민원과, 공단환경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건축민원 등 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나. 노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악취측정상황실 운영 및 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사업소에는 평생교육과, 상록도서관과, 단원도서관과, 여성비전센터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평생학습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5. U-정보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U-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공공시설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저당권에 관한 사항
 - 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1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

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구청장)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를 둔다.

제2절 동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업무,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②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민원즉심관”을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③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 ⑥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 ⑦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 ⑧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창조경제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 ⑨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 ⑩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 ⑪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 ⑫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비전센터”로 하고, 제1조 중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각 조항의 “회관”과 “관장”을 각각 “센터”와 “센터장”으로 한다.
- ⑬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산시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안산시여성비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산업지원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지식정보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고잔동)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재지
상록구	상록구청
	일동 주민센터
	이동 주민센터
	사1동 주민센터
	사2동 주민센터
	사3동 주민센터
	본오1동 주민센터
	본오2동 주민센터
	본오3동 주민센터
	부곡동 주민센터
	월피동 주민센터
	성포동 주민센터
	반월동 주민센터
	안산동 주민센터
단원구	단원구청
	와동 주민센터
	고잔1동 주민센터
	고잔2동 주민센터
	호수동 주민센터
	원곡본동 주민센터
	원곡1동 주민센터
	원곡2동 주민센터
	초지동 주민센터
	선부1동 주민센터
	선부2동 주민센터
	선부3동 주민센터
	대부동 주민센터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비 고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일원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일원	
원곡보건지소	안산시 일원(외국인근로자)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대부남동보건진료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1.04.04 조례 제0401호
개정 1992.03.18 조례 제0440호
개정 1995.01.17 조례 제0577호
개정 1995.07.13 조례 제0638호
개정 1995.10.31 조례 제0654호
개정 1996.12.06 조례 제0719호
개정 1998.06.29 조례 제0793호
개정 1998.10.12 조례 제0803호
개정 2000.04.04 조례 제0910호
개정 2000.12.01 조례 제0947호
개정 2001.11.29 조례 제0995호
개정 2002.10.31 조례 제1041호
개정 2003.06.18 조례 제1076호
개정 2004.01.12 조례 제1110호
개정 2004.10.20 조례 제1153호
(일부개정) 2005.05.26 조례 제1196호
(일부개정) 2006.03.10 조례 제1249호
(일부개정) 2006.09.28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07.01.01 조례 제1291호
(일부개정) 2008.04.11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09.03.27 조례 제1462호
(일부개정) 2010.08.03 조례 제1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1>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 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

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04.11〉

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4.1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경제사회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본조개정 2010.8.3〉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4.11〉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기타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9.03.27>
 - 나. 창조경제국(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정보문화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사회위원회
 - 가. 창조경제국(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스포츠마케팅과, 지구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클린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3.27>

다. 구청(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03.27>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한 사항 <개정 2009.03.27>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 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4.1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a.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주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삭제 <2006.9.28>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0.12.01, 개정 2006.9.28>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0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5.10.30, 개정 2000.12.01>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

여야 한다. <신설 1995.10.31, 개정 2000.12.01>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1995.01.17 조례 제0577호>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최초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시행전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최초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조례 시행전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간사 각각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1998.06.29)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의회·총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의회·행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간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00.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2)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사항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 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부 칙(2009.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05
----------	------

제안년월일 : 2010. 9. 2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수 정 이 유

- 'U정보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적합하여 부서의 소관을 조정함.

2. 주 요 골자

-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중 'U정보센터'소관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함(안 제3조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U정보센터”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4호 나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 가. ~ 나. (생략) 다. 지식정보사업소, <u>U정보센터</u>,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생략)</p> <p>3. 경제사회위원회 가.~다.(생략)</p> <p>4. 도시건설위원회 가. (생략) 나. 상하수도사업소,<삽입>, 차량등록사업소 소 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p> <p>2. 기획행정위원회 가. ~ 나. (개정안과 같음) 다. 지식정보사업소,<삭제>,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개정안과 같음)</p> <p>3. 경제사회위원회 가.~다.(개정안과 같음)</p> <p>4. 도시건설위원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상하수도사업소,<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개정안과 같음)</p>